

제30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및 종합적성검사 등 장소·일정 공고

제30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및 종합적성검사 장소·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소 방 청 장

I. 서류·신체검사서 제출

가. (제출일시) '24. 2. 14.(수) 08:30 ~ 09:00 ※ 종합적성검사 등록 시 제출

나. (제출장소) 중앙소방학교(공주) 강의동 3층* **[붙임 5]**

* 주소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0 중앙소방학교

다.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②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라. 신체검사 방법 및 유의사항

1) 검사방법: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붙임 4-3]**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한 응시자는 면접시험일 전일 (24.2.20.)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 제출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625호 교육훈련담당관(원서접수담당) / 우편 30128

2) 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불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 참고 **[붙임 4-1]**

신체검사 유의사항

- ▶ 약물검사(TBPE) 시 금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약(감기약, 천식약 등)이나 카페인 과다 복용 시(녹차, 홍차, 피로 회복제 등)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전 약물 및 카페인 섭취에 주의 필요
 - ▶ '색각' 이상자는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 ▶ 색약 교정렌즈 등 부정합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리
 - ▶ 신체검사 관련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 ※ 약물검사(TBPE)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는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

Ⅱ. 종합적성검사

1 검사개요

가. (등록일시) '24. 2. 14.(수) 08:30 ~ 09:00 * 서류제출 후 검사장 입장

※ 등록 마감시각(09:00:00)까지 미등록 시 응시불가 * 등록장소: 강의동 3층

나. (검사시간) '24. 2. 14.(수) 09:00 ~ 12:00

※ 09:00 ~ 09:30 사전교육, 09:30 ~ 12:00 종합적성검사(인성30', 적성80', 쉬는시간10', 사전조사서30')

다. (검사장소) 중앙소방학교(공주) 강의동 3층(인문계열 301호, 자연계열 302호) **【불임 5】**

라. (대 상) 67명 (필기시험 합격자)

마. (주요내용)

검사항목	검사시간/문항	주요내용
인성검사	30분 / 250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조직 적합도와 직무 몰입에 필요한 개인의 가치동기태도 등 검증 ▪ (방법) OMR카드에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
적성검사	80분 / 6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학습능력 등 검증 ▪ (방법) OMR카드에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
사전조사서	30분 / 2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제시된 질문(2문항)에 대해 응시자 본인의 생각 및 경험을 자필·유색볼펜으로 조사지(A4)에 서술 ▪ (활용) 작성한 자료는 인성면접(15분)시 면접위원에게 제공 예정 <p style="color: red; font-size: small;">면접위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출신 지역 및 학교, 가족관계, 종교, 이전 직장명 등의 정보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바. (주의사항) **종합적성검사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시험결과) 면접시험 시 면접위원의 평정 참고자료로 활용

2 준비물

가.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 ②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③ 운전면허증

④ 주민등록번호가 전체표기 된 기간만료 전 여권

⑤ 모바일신분증(정부24 모바일주민등록증, 시·도 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운전면허증) * **PASS앱 불가**

※ (주의)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나. (응시표) 응시번호 확인용 / 119고시 누리집*에서 출력 가능

* 119고시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다. (필기구)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 유색 볼펜(검정 또는 파랑), 수정테이프

※ 표기한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며 불량 수정 테이프 및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운영절차

검사 준비		검사 실시			
① 검사장 도착	② 사전교육	③ 인성검사	③ 적성검사	휴식 시간	④ 사전조사서
	30분	30분	80분	10분	30분

① (검사장도착) 응시좌석표에서 개인별 응시좌석을 확인한 후 시험장으로 입장

② (사전교육) OMR답안지 작성요령 안내, 시험 주의사항 및 시험지 배부

③ (종합적성검사) 시험 응시 및 OMR카드 작성 후 제출

④ (사전조사서) 사전조사서 자필 작성 후 제출

※ (주의) 면접위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출신 지역 및 학교, 가족관계, 종교, 이전 직장명** 등의 정보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작성바랍니다.

4 종합적성검사 응시자 준수사항

가. **종합적성검사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 당일 09:00:00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을 완료 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종합적성검사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주의)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장 내 보안을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일체 사용이 금지되며, 시험감독관 등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종합적성검사 관련 자료 일체는 외부 반출이 금지됩니다.

바. 종합적성검사 당일 응시인원이 많은 관계로 시험장 입구가 붐빌 수 있으니, 시험장에 여유롭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장 전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 ▶ 시험장 내 시험 관련 부착물 등의 사진 촬영은 금지됩니다.
- ▶ 시험장 물품의 파손·훼손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해야 합니다.

5 종합적성검사 답안지 작성 및 유의사항

가.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적색펜,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면 마킹하지 않은(무효) 답안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2)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인·적성 결과는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라.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명)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년월일 및 응시번호)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해당란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3)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마.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시험종료 직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점오류(귀책 사유) 사례

- ▶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 ▶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 ▶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능한 경우
- ▶ 예비표기 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연필, 샤프, 적색펜 등) 사용한 경우
- ▶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 ▶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 ■■■■)를 훼손한 경우
- ▶ 수정테이프 사용 후 번짐, 뜯김 등이 발생한 경우

<보기> 올바른 표기 : ● / 잘못된 표기 : ◐ ⊗ ⊙ ⊖ ⊕ ⊘ ⊙ ⊚ ⊛

6 사전조사서 작성 및 유의사항

가. 사전조사서의 작성시간은 30분이며, 자필·유색볼펜(검정 또는 파랑)으로 작성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틀린 문구 이중실선으로 삭제 처리 후 이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조사서 작성 시 면접위원이 사전조사서의 내용을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위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출신 지역 및 학교, 가족관계, 종교, 이전 직장명** 등의 정보를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전조사서는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 목적 외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Ⅲ. 체력시험

1 체력시험 (종목별 점수 및 측정 방법 **【붙임 1】**)

가. (등록일시) '24. 2. 14.(수) 13:00 ~ 13:30

※ 등록 마감시각(13:30:00)까지 입실 완료 (시간 초과 시 입장 불가)

나. (시험장소) 중앙소방학교(공주) 실내체육관 **【붙임 5】**

다. (시험대상) 67명 (필기시험 합격자)

라. (시험종목) 6종목*

* 약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마.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상·하의 운동복, 운동화

※ 신분증 미지참자 체력시험 응시 불가

유의사항

▶ (응시표) 119고시 누리집에서 출력*(필기시험 응시표와 동일)

* 체력시험 장소 공고일에 응시표 분실자만 출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표기된 기간만료 전 여권, 전자신분증*에 한함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시·도 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운전면허증(PASS앱 불가)

▶ (운동복) 측정 센서에 영향을 주는 복장 착용 시 시험실시기관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운동화) 스파이크 또는 이와 유사한 금속재 등이 부착된 운동화 착용 불가

2 도핑테스트 (도핑테스트 안내문 **【붙임 2】**)

가. (일 시) '24. 2. 14.(수) ※ 체력시험 종료 후 시료 채취

나. (장 소) 중앙소방학교(공주) 수난구조훈련장 소변채취실

다. (대 상)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5% 무작위 선정(소수점 절사)

라. (시료검사) 소변(90ml) 채취 후 전문검사기관 의뢰

마. (동의서 징구)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바. (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후 부정행위자 조치

※ 최종합격자 결정 후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 시 선발시험 합격은 취소될 수 있음

3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24. 2. 16.(금) 14:00

나. (공고방법)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 게시

IV. 면접시험

가. (시험일자) '24. 2. 21.(수) ~ 2. 22.(목)

※ 개인별 응시일정 등 세부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

나. (시험장소) 중앙소방학교 강의동

다. (주요내용) 업무 특성을 반영한 능력·인성요인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심층개별면접(발표면접·인성면접) 실시

라. (운영절차)

면접 준비		면접 실시		
응시자 교육	① 발표준비	② 발표면접		③ 인성면접
		발표	질의·응답	질의·응답
	10분	3분	7분	15분

① (발표준비) 시험운영본부에서 제시한 발표주제*를 10분간 직접 작성·검토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직무와 관련된 문제지 및 메모지를 발표검토장에서 응시생에게 배부

② (발표면접) 주제 검토의견을 면접위원에게 3분간 발표하고 이후 7분간 질의·응답

③ (인성면접) 공직관·팀워크(협업능력)·침착성(책임감) 및 책임감과 관련된 공통질문을 제시, 응시자 답변에 따른 면접위원과 질의·응답

④ (시험종료) 운영요원 통제에 따라 시험장 순차적 퇴장 및 전자 설문조사 후 귀가

V. 응시자 유의사항

1 체력시험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정으로 합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시행합니다.

※ 체력시험 응시자 중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도핑테스트 실시

다. 체력시험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되면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아닌 사람은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바. 체력시험 전 또는 실시 중에 응시자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연기하거나 추가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졌을 때 포함) 그 해당 종목에만 측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재시험 시점은 시험 당일로 하며 시간은 시험본부에서 결정합니다.

사. 체력시험 중에는 판정관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가 인정됩니다.

아. 체력시험 응시 중 바닥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보조용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장비 착용 등 시험 유의사항

- ▶ 스포츠 테이핑, 상처 보호용 밴드는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
- ▶ 탄산마그네슘 가루, 붕대, 복대 등 보호대 사용 금지
- ▶ 약력, 배근력 종목에서는 시험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반 코팅 장갑 사용 가능
- ▶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장(후드티 등) 및 용모(긴 손톱, 긴 머리)는 시험 운영과정에서 제재 예정
- 긴 머리는 머리 뒤쪽으로 묶어서 체력측정 기기 등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
- ▶ 물·음료는 개인 지참(물·음료 이외의 다른 액체류 제품은 섭취 금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2항제4호“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에 해당

자.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 시험 세부 운영 방법(측정방법, 실력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합니다.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차.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체력시험 중 촬영되는 동영상은 시험판정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며 응시자에게는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 ▶ 체력시험 촬영 동영상은 시험 종료 후 삭제합니다.
- ▶ 종목별 측정 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을 실시한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상 촬영 판독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 촬영된 영상으로 판정이 어렵거나, 장비의 고장 등으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 판정관의 최초 판정 결과에 따릅니다.

타.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시행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파. 체력시험 채점에 대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력시험 채점표 유의사항 안내

① (채점) 전산 판독(이미지 스캔) 결과에 따름

- ② 계산된 총점 등 기타 비고란에 볼펜 등으로 기재된 숫자는 판독하지 않음
-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①항 7호 의거 **채점표를 고의로 수정하는 등**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시험을 정지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응시자) 매 종목 득점 점수를 확인하고 최종 응시자 확인란에 서명해야 함

※ 응시자는 측정기록점수가 득점 마킹란에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

- 시험종료 후 개인별 점수 ☎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 가.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방공무원 선발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소방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약물검사(TBPE)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 검사서류는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전체표시된 기간만료전 여권 중 1), 반명함판(3cm×4cm) 컬러사진 1~2매(병원마다 다름), 신체검사 수수료(병원마다 다름)를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마. 색약교정렌즈 등 부정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바.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력, 혈압, 시력은 반드시 수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사.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의 압인, 계인 처리, 담당 의사 서명(인),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등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아.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된 사람은 서류전형 접수기간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전 소방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밀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며, 재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서류제출

- 가. 모든 제출서류는 시행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자격 및 면허증 사본 가능)만 인정합니다. 거짓,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나. 제출서류 확인 결과 거짓 사실로 판명되면 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①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7)

- ① - 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4)

② 도핑테스트 안내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입교육업무 처리지침」 참고자료2)

- ② -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② - 2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② - 3 도핑테스트 동의서

③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④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 ④ - 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④ - 2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④ - 3 2023년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목록
④ - 4 소방공무원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

⑤ 체력시험장(중앙소방학교) 안내도

⑥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채점표(남·여)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종 목	측정방법 등
<p>약 력</p> <p>(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배 근 력</p> <p>(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배근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p> <p>(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혔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정방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cm ○ 측정 방법: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회 ○ 측정 방법: 양발을 3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별도 ○ 측정 기록: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안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 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붙임 2-1)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응시대상의 5%에서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90ml)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 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 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 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Clenbuterol

2. 이뇨제: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 ▶pentazocine ▶pethidine

□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1. 응시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남 [] 여 []
생년월일		응시번호	
핸드 폰		이 메 일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성명		전공분야	
주소			
전화(팩스)		전자우편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하며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하고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비 고

-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도핑테스트 동의서

■ 응시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응 시 번 호		연 락 처	

본인은 제30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 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썸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는 제외)인 경우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 분야	성명	생년월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시력		맨눈	좌: 우:	색 신 (색 각)	혈	압	청력
교정		좌: 우:	정상		좌: 우:		
안 질 환				이비인후질 환			
치 아				호흡기질 환			
간 질 환				신경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부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신질 환 (TBPE 검사 포함)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 합 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 격 여 부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000 (내선 2) 02-2276-7158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5층, 종합건강진단센터	1577-0075 02-870-2039	
3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별관 3층 건강검진센터	02-2276-2335 02-2276-2355	
4	경찰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국립경찰병원(가락동),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802	
5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051-240-7830	
6	부산의료원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061	
7	부산보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141	
8	좋은강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80 (남천동)	051-610-9865	
9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 2가)	053-200-5791	
1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신당동)	053-258-4171	
1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대명동)	053-650-3534	
12	대구의료원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	053-560-7387	
13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신암동)	053-940-7522	
14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대명동)	053-620-3180	
15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학정동)	053-200-7101~2	
16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176	
17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수로 56, 뇌병원 3층 건강관리센터	032-280-6056	
18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33	032-836-1733	
19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구산동)	032-500-0266	
20	인천직십자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연수동)	032-899-4332	
21	광주보훈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062-602-6300	
22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5	
23	대전보훈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407	
24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042-670-5247	
25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울산 동구 대학병원로 25	052-250-8349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 화 번 호	비고
26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울산	울산 중구 태화로 239	052-241-1471	
27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울산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052-259-5264	
28	엔케이세종병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61(나성동)	044-850-7888	
29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031-219-5608	
30	동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31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031-820-5334	
32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27	032-340-2169	
33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031-412-5390	
34	광명성애병원	경기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6	02-2680-7539	
35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1577-8013	
36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032-621-5500	
37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경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37	031-8041-3038	
3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정자동)	031-888-0576	
39	성남시의료원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성남시의료원 (태평동)	031-738-7007	
40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일동)	031-500-1182	
41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동)	031-828-5162	
42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기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 (신읍동)	031-539-9334	
43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기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 경기도립의료원파주병원 (금 촌동)	031-940-9109	
4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당왕동)	031-8046-5131	
45	강원대학교병원(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033-258-2313	
4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상급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033-741-1670, 2	
47	강릉아산병원(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48	청주성모병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043-219-8795	
49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사직동)	043-279-2366	
50	천안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333	
51	공주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041-962-1232	
52	서산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041-689-7167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 화 번 호	비고
53	홍성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77	
54	보령 아산병원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041-930-5555	
55	백제병원	충남	충남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취암동)	041-730-8985	
56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6	
57	대자인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	063-250-8775	
58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지곡동, 군산의료원)	063-472-5151	
59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전북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063-620-1238	
60	목포시의료원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472	
61	성가롤로병원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907-7100	
62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271	
63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759	
64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89-1860	
65	김천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054-429-8212	
66	포항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054-245-0115	
6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0	055-360-1255	
68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 경희대학교교육협력중앙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055-330-6023	
69	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055-750-1325	
70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234	
71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2층 건강증진센터	055-214-2050	
72	창원파티마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53	
73	창원한마음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055-225-1302	
74	제주한라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298	
75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280	
76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1608	
7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흥동)	064-730-3029	

□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 검사 가능 병원: 5개소

순번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경찰병원(국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269
2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051-240-7320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길 82	031-787-2114
5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0	055-360-1255

- ▶ 색각 이상자의 경우, 위 병원에서 색각경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 병원(77개소)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 또한, 위에 명시한 의료기관 외에 색각경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색각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정기준

1색각(적색)			2색각(녹색)			3색각(청색)			색맹
약도	중도	강도	약도	중도	강도	약도	중도	강도	
0	불합격	불합격	0	0	0	0	0	0	불합격

↳ 색맹(녹색맹 포함)은 모두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

- 시험장소 ① (서류제출 및 종합적성검사) 중앙소방학교 강의동 3층 ^{301호, 302호}
② (체력시험) 중앙소방학교 실내체육관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채점표(남)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채점표 (남자)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측정일자				23. .							
약력 (kg)	측정기록	(1차) 좌: 우: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2차) 좌: 우:					기록관 (서명/인)	
	기준	45.2 이하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특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배근력 (kg)	측정기록	(1차) * 소수점 절사					(2차)					기록관 (서명/인)	
	기준	146 이하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특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cm)	측정기록	(1차)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2차)					기록관 (서명/인)	
	기준	16.0 이하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특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제자리 멀리뛰기 (cm)	측정기록	(1차) * 소수점 절사					(2차)					기록관 (서명/인)	
	기준	222 이하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특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윗몸 일으키기 (회/분)	측정기록											기록관 (서명/인)	
	기준	42 이하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특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암목 오래달리기 (회)	측정기록											기록관 (서명/인)	
	기준	56 이하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특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비고)								(응시자확인)				성명 :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채점표(여)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채점표 (여자)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측정일자					23. .						
약 력 (kg)	측정기록	(1차) 좌: 우:					(2차) 좌: 우:					기록관 (서명/인)	
	기준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특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배근력 (kg)	측정기록	(1차)					(2차)					기록관 (서명/인)	
	기준	* 소수점 절사											
	특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cm)	측정기록	(1차)					(2차)					기록관 (서명/인)	
	기준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특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제자리 멀리뛰기 (cm)	측정기록	(1차)					(2차)					기록관 (서명/인)	
	기준	* 소수점 절사											
	특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윗몸 일으키기 (회/분)	측정기록											기록관 (서명/인)	
	기준	32 이하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특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왕복 오래달리기 (회)	측정기록											기록관 (서명/인)	
	기준	27 이하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특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비고)							(응시자확인)						
							성명 :						